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신 종 갑 의원)

|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25-30 |
|------------|-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5. 4. .

발 의 자 : 신종갑, 고병준, 권인순,  
김승수, 오욱자, 장정희,  
차해영

## 1. 제정 이유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안 제5조)

라.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안 제8조)

## 3. 관계법령

1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5. 4. 1. ~ 4. 7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3. “정신건강증진시설”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.
4. “응급정신질환자”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·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(危害)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”란 정신질환,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·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,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해야 한다.

1.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
2.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
3.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
4.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2. 서울 마포경찰서
3. 마포소방서
4.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
5. 정신건강증진시설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

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,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⑨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) ① 구청장은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,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,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·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) 구청장은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
2.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호송비용
3.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
4.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·운영 중인 「마포구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」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10. 22.] [법률 제20511호, 2024. 10. 22., 타법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·유아, 아동, 청소년, 중·장년, 노인 등 생애주기(이하 “생애주기”라 한다)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, 우울·불안·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: 조례안 제7조 제1호

제7조(지원) 구청장은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한 **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**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5년 정신응급병상 운영 지원 기준(국비 50%, 구비 50%)에 따른 응급병상 운영 자치구(11개구) 소요예산 평균치를 근거로 설정: 병상당 267,490원/일
- 연중 24시간 응급입원 수용 및 입원실 상시 제공(병실사용료, 의료인력 인건비 등 포함)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         |          | 1차년도          | 2차년도          | 3차년도          | 4차년도          | 5차년도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구분          | 세입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소계(a)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구분          | 세출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의료맞회복비 | 48,817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439,353        |
|             | 소계(b)    | 48,817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439,353        |
| □ 총 비용(a-b) |          | <b>48,817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439,353</b> |

○ 산출기준: 267,490원/일×365일×1개 병상=97,633,850원

※ 1차년도(2025년)는 6개월 운영 시 소요예산으로 비용을 추계함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  |        | 1차년도          | 2차년도          | 3차년도          | 4차년도          | 5차년도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구분   | 의존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재원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소계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국비보조금  | 24,409        | 48,817        | 48,817        | 48,817        | 48,817        | 219,677        |
|      | 지방교부세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구분   | 자체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수입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소계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지방세수입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세외수입 등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지방채 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민간자본 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| 구비     | 24,408        | 48,817        | 48,817        | 48,817        | 48,817        | 219,676        |
|      | 합계     | <b>48,817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439,353</b> |

5. 덧붙이는 의견

- 조례안 제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병상 운영을 위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여건(병실사용료, 의료인력 인건비 등)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감될 수 있음
- 국·시비 지원 기준(재원비율) 변경 시 구비 예산이 증감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보건행정과 정유진    |
| 연 락 처  | 02-3153-9041 |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산출기준: 267,490원/일×365일×1개 병상=97,633,850원

(단위 : 천원)

| 통계목         | 구분   | 1차년도          | 2차년도          | 3차년도          | 4차년도          | 5차년도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료 및<br>회복비 | 병상수  | 1개소           | 1개소           | 1개소           | 1개소           | 1개소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일수   | 183           | 365           | 365           | 366           | 365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소요예산 | 48,817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97,634        | 439,353        |
| 계           |      | <b>48,817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97,634</b> | <b>439,353</b> |